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87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 장종태·문진석·이성윤

안규백 • 김영환 • 김기표

김선민 • 박지원 • 김남희

전종덕 · 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는 않고 있음.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 임. 게다가,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임.

이에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 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 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의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보건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
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	
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3의2.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
	<u>항</u>
<u><신 설></u>	3의3.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에 관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